

실업급여수급자를위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

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집체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므로
동 자료를 대신하여 배포하오니,
반드시 금일중으로 해당자료를 꼼꼼하게 읽고
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교육자료를 학습하지 않을 경우
구직급여 수혜중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
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셨습니다.

» 실업급여제도

실업급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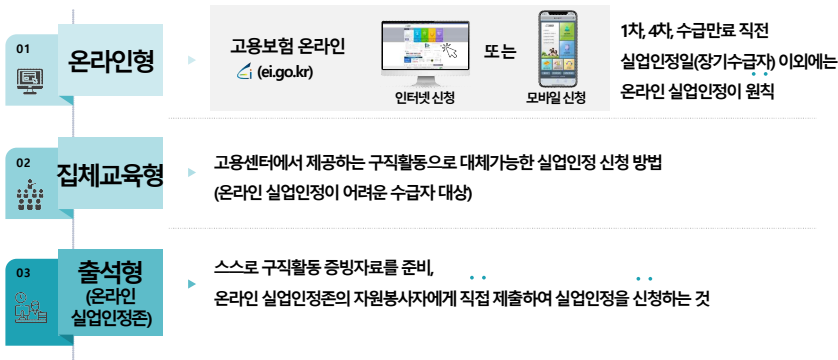
- ✓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시
- ✓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
- ✓ 구직활동지원금 (통상 '구직급여')

실업인정

- ✓ 개념 :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
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
- ✓ 지급 조건 : 1~4주 단위로 실업인정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
- ✓ 소멸 조건 :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

》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

-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 제출
- 28일(4주)에 한 번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



»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

1

- ✓ 실업인정일 당일 00:00 ~ 17:00 전송가능
- ✓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(전송 버튼 비활성화)
- ✓ 가급적 오전에 전송요망
- ✓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



2

- ✓ 고용보험(ei.go.kr) ≠ 워크넷(work.go.kr)
- ✓ 구직활동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
- ✓ 워크넷-구직활동 결과 역시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최종 전송해야 함



3

- ✓ 해외전송/대리전송 불가 → 부정수급 해당



4

- ✓ 해외취업예정 →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필요



소정급여일수 1/2 시점 안내

1차 교육 당일

연장 급여	종류	연장절정일	연장일수	수급기간 만료일	확인
이직(배업)전직업	직종			월임금 (만원)	749
재취업 활동계 획	취업희망1	직종		월임금 (만원)	700
	취업희망1	직종		월임금 (만원)	

심사청구 안내

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
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담당자 전화번호:

팩스번호: 042-717-4005

2019년 03월 04일

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정

○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은
취업희망카드 1쪽에 부착해주세요.

고용보험수급자격증

성명	김OO	실업인정담당자	김OO
주민등록 번호	123456-7	수급자격 신청일	2019/2/2
주소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		
구직 번호	K12345678	이직 (배업)일	2018/03/00
최초 실업인정일	2019/3/4(월)	소정급여일수 만료일	2019/00/00
소정급여 일수	120~270	구직급여 일액	00,000원

○ 소정급여일수 1/2 = 조기재취업수당

- ✓ 1년 이상 재직
- ✓ 1년 이상 사업 영위

※ 자영업 예정자: 창구 담당자와 유무선 상담 필수

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산정 안내

고용보험수급자격증			
성명	김00	실업인정담당자	김00
		소정급여일수 1/2시점 (*참고사항, 변경될 수 있음)	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
주민등록 번호	123456-7	수급자격 신청일	2019/2/28
주소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-0		
구직 번호	K12345678	이직 (폐업)일	2018/00/00
최초 실업인정일	2019/3/4(월)	소정급여일수 만료일	2019/00/00
소정급여 일수	120~270	구직급여 일액	00,000원

소정급여
일수

120~270

○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까?

└ 실업급여 수급기간/일수

연령 \ 피보 험기 간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》 구직급여일액 안내

고용보험수급자격증			
성명	김00	실업인정담당자	김00
		소정급여일수 1/2시점 (*참고사항, 변경될 수 있음)	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
주민등록 번호	123456-7	수급자격 신청일	2019/2/28
주소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-0		
구직 번호	K12345678	이직 (폐업)일	2018/00/00
최초 실업인정일	2019/3/4(월)	소정급여일수 만료일	2019/00/00
소정급여 일수	120~270	구직급여 일액	00,000원

구직급여
일액

00,000원

○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일까?
L 1일 지급기준 금액

지급액

이직전 사업장에서
지급받던 평균임금의
60%

6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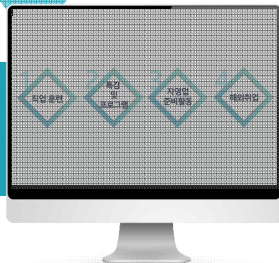
₩

》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

I 적극적인 구직활동



II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



★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적합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★

증빙자료

면접확인서

면접확인서 

■ 면접대상자
성명: _____ (생년월일: _____)
위 대상자가 구인 중인 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
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면접을 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☐ 사업장명: _____
☐ 소재지: _____
☐ 사업장 연락처: _____
☐ 자필 불여(직종) _____

명칭 있는 경우 붙여주세요.

■ 면접확인자
소속(직위): _____ 성명: _____ (서명 또는 인)

고용노동부 00지청장 귀하

이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사실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- ※ 취업희망카드에 받아오거나,
명함만 제출 시 구직활동 인정 X
- ※ 면접확인서 빈 칸없이 작성 후,
반드시 인사담당자 서명 받아와야 함

증빙자료



구인광고



등기/발송
영수증

- ✓ 발송인
 - ✓ 수취인
 - ✓ 송신일
- 3가지 모두 확인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함



팩스 직접 발송 시 수신리포트 제출

》 인터넷 입사지원 종류

1

워크넷
(workgo.kr)

WORKNET

별도 증빙자료 불필요
(※구직활동내역 조회)

2

취업포탈
사이트saramin
JOBKOREA

- 잡코리아, 사람인 등
- 구인공고 + 취업활동증명서

3

E-mail
입사지원

구인공고 + 보낸편지함

4

홈페이지
입사지원구인공고 + 지원완료화면
(지원일 확인)

》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

워크넷 구직활동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안내

✓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

✓ 워크넷 입사지원: 구직활동 인정횟수 제한

- 수급자 개인의 입사지원 횟수와 무관,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은 횟수만 계산
-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: 구직활동 인정횟수 총 3회로 제한
- 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: 구직활동 인정횟수 총 5회로 제한

✓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

-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구직활동에 대해 필수 모니터링 진행
-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2회 이상 확인 시 입사지원 제한

✓ 워크넷 구직정보 비공개 전환

- 비공개가 원칙이나 수급자 동의 및 고용센터 서비스 지원을 원한다면 공개
- 공개 전환 시 워크넷 상의 모든 구직활동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

» 취업포탈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

증빙자료 » ☒ 구인광고 + 취업활동증명서

» e-mail로 입사지원 시

증빙
자료



- ☒ 구인광고 + 보낸편지함
- ☒ 채용담당자 이메일 =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
- ☒ 메일 보낸 날짜(구직활동일자) 증명

» 채용기관 홈페이지로 입사지원 시

증빙
자료



- ☒ 구인광고 + 입사지원 완료화면
- ☒ 컴퓨터 화면 상 시계달력,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(구직활동일자)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

》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

I 적극적인 구직활동



II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



»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

○ 취업희망카드 24쪽 참고

증빙
자료

- ✓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+ 출석부 사본
- ✓ 특강/프로그램 참가 수료증
- ✓ 자영업계획서 + 자영업활동내역서 (순차제출)
- ✓ 해외취업활동계획서 + 해외취업활동내역서(순차제출)

1

직업 훈련

2

특강
및
프로그램

3

자영업
준비활동

4

해외취업

» 직업훈련 증빙자료

직업훈련 수강증명서 + 출석부 사본

⚠ 4주 단위로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구직활동 2건 면제

» 특강/프로그램 증빙자료 <참가수료증> 신종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 특강 운영하지 않음.

취업희망프로그램	- 구직활동 2건 면제 -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1번 인정
단기집단/취업특강프로그램	- 횟수 제한 없음 - 동일 특강은 2번까지만 인정
심리안정 프로그램	소정급여일수 중 1회만 인정
워크넷 직업심리검사	
사회봉사활동 참여	- 한 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참여 후 확인증 필수 제출 - 구직활동 1건 인정

»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



필수방문회차에는 특강신청 불가

1

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 접속

2

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상 '취업특강 바로가기' 선택

3

수강을 원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의 차시 선택

4

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

▶ 자영업 증빙자료

3



자영업 준비활동

증빙자료



자영업활동등록서				
신청인명 (자영업자 소재지)	성명	주요사업종목		
	주소	전화번호		
영업목적				
영업자지 명	200.	계좌주명(인)	주출금(인)	
영업종류	영업종류(인)			
영업내용	영업내용(인)			
영업종류(명칭)	영업종류(명칭)			
영업종류	1차영업종류		2차영업종류	
영업자지 수인명	지출금 200.	주지 200.		
	계좌주			
	영업종류(명칭)	영업		
	영업종류(명칭)	영업		

인 성 명
 (인) 또는 (인명)

영업장
 (인) 또는 (인명)

자영업 계획서

[illegible]

자영업 활동 내역서
(순차제출)

»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의 예시

○ 취업희망카드 2쪽 참고

1

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이 수첩에 기재한 경우



2

동일업체 중복지원



3

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



4

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 또는 전단지를 제출한 경우



5

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, 친구 등에게 서명, 명함 등만 받아오는 경우



6

구인공고의 희망직종·경력·학력·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비매칭 되는 경우



》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

○ 취업희망카드 28쪽 참고

1

대기기간
(실업신고일로부터
7일)
이 지난 후



재취직

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고용

or

사업

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

2

소정 급여일수
만료일 내에

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 일수가 $\frac{1}{2}$ 이상인 경우



지급대상 조건은 2가지 모두를 동시 충족하여야 함



»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

○ 취업희망카드 28쪽 참고



1

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
2

실업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
3

대기기간(신청일로부터 7일)중에 재취업한 경우

4

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/2 미만인 경우

5

취업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근로의 단절

6
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

7

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»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방법(12개월 후)

우편, 팩스, 내방



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

+

근로자

근로계약서
or
재직증명서

자영업자

자영업 계속
영위 증빙자료

인 터 넷

1

고용보험 사이트(ei.go.kr)



2

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



3

증빙자료 첨부 후 전송

“

$$\text{지급액} = \text{구직급여일액} \times \text{잔여 급여일수의} \frac{1}{2}$$

”

» 실업급여 관련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

- 1 적극적 '구직활동'
- 2 구직활동 기간
- 3 취업한 경우
- 4 직업지도 거부 시
구직급여 지급 정지 될 수 있음
- 5 부정수급을 한 경우
- 6 방문일 착오 변경
- 7 자영업 및 자유직업종사자 준비 시
최소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방문상담
- 8 조기재취업수당
- 9 재실업신고
- 10 직업훈련 참여시,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
수강증명서 + 출석부 지참
- 11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방문일/인터넷
전송일에 신고
- 12 실업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 도입·운영

» 유의사항- 취업한 경우 안내

○ 취업희망카드 27쪽 참고

실업급여를
받는 도중
취업을 했다면?

신고방법은
2가지

반드시, **60일** 이내

- ☑ “취업사실신고”를 해야
실업급여를 지급받음

1 인터넷으로 전송(ei.go.kr)

2 우편, 팩스, 방문 제출

취업사실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
취업한 직전 날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모두 소멸

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퇴사 후 **7일 이내**에 센터에
방문하여 재실업 신고시 원래 만료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 가능

» 유의사항- 방문일 착오변경 안내

○ 취업희망카드 4쪽 하단 참고


방문일
착오 변경



- ☑ 단 1번만 가능
- ☑ 반드시 2주(14일) 이내
- ☑ 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


부득이한
사유



예비군 훈련

병원 진료

원거리 지방 면접



증명자료
제출

》유의사항- 자영업 및 자유직업 종사자 준비 시 안내

자유직업종사자

보험설계

다단계

영업딜러

학습지 교사

프리랜서 등



자영업자로 분류



해당 직종으로 취업의사가 있는
분들과 자영업예정자이신 분들은

자영업
계획서

+

자영업
활동내역서

매달

- ✓ 위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업인정 가능
- ✓ 자영업 개시 전에 제출해야 초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
 - ↳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개시 했다면 수당 청구X

자영업예정자



유·무선을 통해 창구 담당자와 상담필수

» 유의사항- 근로사실신고 안내

○ 취업희망카드 31쪽 참고

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
근로일이 있다면?



-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근로사실 신고 필수
- 근무 현장명, 연락처, 근로일 제출
- 수입·소득·일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
- 하루라도 늦게 신고할 시 부정수급



미신고로 중복수혜,
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경우



- 부당이득 환수
- 2번 이상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중지
- 그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

